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(안)

전문제정 2019.02.28. 개정 2020.04.23.. 개정 2025.05.08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이하 "혁신지 원사업" 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근거)

이 규정은 교육부의 "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"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 및 "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지침"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에 근거 한다.

제3조 (규정 적용범위)

이 규정은 혁신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본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 (운영체제)

총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른 혁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사업 전담조직(이하"사업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 (사업전담조직)

- ① 총장은 사업단의 장(이하 "사업단장"이라 한다)을 임명하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, 사업단을 관리·감독한다.
 - 1.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
 - 2.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
 - 3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 - 4.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
 - 5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
 - 6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-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본 대학의 각종 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.
-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하부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 (사업기간)

- ① 사업기간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기간을 벗어난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. 단,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 (사업계획 수립)

- ① 사업단은 학부, 계열 및 (학)과, 행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.
- ② 사업단은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사업 계획 서를 작성하고,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1. 사업목적 및 필요성
 - 2.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계획
 - 3. 자체 사업운영지침 및 자체평가 계획
 - 4.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
 - 5.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 (사업의 운영) 사업단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성실히 관리,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

제9조 (사업비의 구성) 혁신지원사업 사업비(이하 "사업비"라 한다)는 혁신지원사업의 국고지 원규으로 한다.

제10조 (사업비의 집행)

- ① 사업비는 수행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본 대학의 산단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20.04.23.>
- ② 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.
- ③ 사업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, 훈령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제11조 (집행절차)

- ① 훈령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업비는 산단회계에서 출납하며 사업비 통장에 입금된 국고지원금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 행위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.<개정 2020.04.23.>
- ② 사업비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한다.
- ③ 훈령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사업종료 후 5년으로 한다.

제12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, 법령, 규칙, 훈령 및 본 대학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19. 2. 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04. 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05. 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5월 08일 부터 시행한다.